



## 교육감 규정

번호: A-418

제목: 성범죄자 통보

항목: 학생

발행: 2008 년 8 월 5 일

### 변경 사항 개요

본 규정은 2006 년 4 월 11 일자 교육감 규정 A-418 을 대체합니다.

#### 변경 내용:

- 현재 교육청 구조를 반영하여 규정서를 갱신합니다.
- 영어 및 기타 언어로 샘플 통지문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.
- 부서들의 이름 및 연락 정보가 갱신되었습니다.



## 교육감 규정

번호: A-418

제목: 성범죄자 통보

항목: 학생

발행: 2008 년 8 월 5 일

### 요약

본 규정은 2006 년 4 월 11 일 자 규정 A-418 을 갱신 및 대체합니다. 본 규정은 뉴욕주의 성범죄자 등록 법에 따라 학교 및 학부모님들께 유죄 판결을 받은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.

#### I. 안전 수칙

- A. 모든 교장은 직원 교육을 포함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낯선 사람에 대응하는 안전 요령에 관해 안내하기 위한 단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:
- 학생은 절대로 낯선 사람과 함께 하교하지 말아야 합니다.
  - 학생은 절대로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.
  - 학생들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어떤 물건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.
  - 낯선 사람이 학생들에게 접근하였으며 학교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, 학교로 돌아와 즉시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.
  - 어린 학생들은 등하교 시 성인이 동반하도록 합니다.
  - 고학년 어린이들은 가능하다면 무리를 지어 함께 걸어서 학교에 등하교하도록 합니다.
- B. 학년도가 시작될 때, 교장은 등록된 성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알려야만 합니다:

1. 뉴욕주 형사 사건 관련 서비스부(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)는 1-800-262-3257 번으로 전화하거나  
[http://www.criminaljustice.ny.gov/SomsSUBDirectory/search\\_index.jsp](http://www.criminaljustice.ny.gov/SomsSUBDirectory/search_index.jsp).  
 교육청의 웹사이트의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홈페이지를 통해 뉴욕주 형사 사건 관련 서비스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:  
<https://www.schools.nyc.gov/school-life/policies-for-all/chancellors-regulations/volume-a-regulations>
2. 레벨 3 등록 성 범죄자에 대한 서브디렉토리는 뉴욕시경 NYPD, One Police Plaza, Room 110 C, New York, NY 10038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
3. 학교에서는 학교의 정해진 장소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사무실에 파일로 보관합니다.
4. 학부모님께 보내는 샘플 정보제공 통지문을 첨부하였습니다(첨부 번호 1). 본 통지문의 번역본을 포함한 샘플 통지문을 다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:  
<https://www.schools.nyc.gov/school-life/policies-for-all/chancellors-regulations/volume-a-regulations>

## II. 배경

- A. 뉴욕주 성 범죄자 등록 법에 따라, 유죄 판결 받은 성 범죄자들은 성 범죄를 저지른 후 10 년 또는 그 이상 뉴욕주 형사 사건 관련 서비스부에 등록하여야만 합니다. 로컬 법 집행 기관은 재 범죄를 행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범죄자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을 학교와 같은 "취약 인구"가 많은 지역에 공지할 권한이 있습니다. 법안은 이런 정보를 인지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습니다.
- B. 뉴욕시 경찰청으로부터 공지 접수  
 뉴욕시경(NYPD) 보로 커맨더 또는 뉴욕시의 각 보로를 담당하는 커맨더의 지명인은 뉴욕주 형사 사건 관련 서비스부에 등록이 필수적인 재범 위험이 있거나 높은 것으로 규정된 성 범죄에 관한 정보를 학교 학군에 공지할 권한이 있습니다.

보로 커맨더/지명인으로부터의 통보는 성 범죄자가 거주하는 보로의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보로 안전 디렉터, 뉴욕시 75 학군 프로그램, 79 학군 대안 아카데미 및 프로그램 및 학생 서비스를 위한 필드 지원 센터 부 디렉터에게 제공될 것입니다.

- C. 뉴욕시경(NYPD) 통보 내용
- D. 뉴욕시경(NYPD)으로부터의 통보("통보")는 기타 다른 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: 범죄자가 이사온 곳의 우편번호, <sup>1</sup>등록된 성 범죄자의 이름, 등록된 성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내용, 등록된 성 범죄자의 가석방 조건과 같은 등록된 성 범죄자에 관련된 특별한 조건 및 내용, 복사기로 다시 복사할 수 있는 등록된 성 범죄자의 사진 사본.

뉴욕시경(NYPD)은 학교 직원들에게 통보로 전달된 내용이 아닌 성 범죄자에 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말 것을 교육청에 제안하였습니다.

뉴욕시경(NYPD)이 교육청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공적인 정보입니다.

### III. 통보를 받은 후 안전 담당직원이 취해야할 조치

- A.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보로 안전 디렉터는 뉴욕시경(NYPD) 보로 커맨더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통지의 내용을 보관할 공식적인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.
- B.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보로 안전 디렉터는 성 범죄자가 거주하는 우편번호에 포함된 모든 학군 내의 부속 및 75 학군, 79 학군 및 필드 지원 센터의 학생 서비스 부 디렉터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통지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C.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보로 안전 디렉터는 성 범죄자 등록 법의 조항에 따라 뉴욕주 형사 사건 관련 서비스부에 등록할 것이 요구되는 개인이 학군(들)에 이사 하였을 때 학군(들)을 지원하기 위한 필드 지원 센터의 디렉터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.

### IV. 통보를 받은 후 학교장이 취해야할 조치

- A.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모든 통보의 내용을 보관하기 위한 공식적인 학교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. 이 파일은 직원 및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위치에 보관되어야 합니다.

---

<sup>1</sup> 정확한 등록된 성 범죄자의 주소는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.

- B. 학교장이 뉴욕시경(NYPD)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았다면, 학교장은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통보하고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통보 내용의 사본을 제공합니다.
- C. 학교장은 학교 안전 수퍼바이저,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건물 관리자를 포함한 적절한 직원에게 해당 통보를 받았음을 주지시키고 통보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등록된 성범죄자의 사진을 포함한 통보의 내용을 교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통보의 사본들은 반드시, 최소한, 학교 안전 수퍼바이저, 학부모 코디네이터, 야외 활동을 감독하는 교직원(예. 쉬는 시간 또는 체육) 및 건물 관리인에게는 제공되어야 합니다.<sup>2</sup>
- D. 학교장은 통보의 주체인 성 범죄자가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이 있다면 즉시 이런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려 911 로 연락하거나 응급 사태 발생을 목격한 직원이 직접 911 로 연락하고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조언하여야 합니다.
- E. 해당 학교장의 학교가 위치한 건물 내에서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, 뉴욕시 75 학군 프로그램 및/또는 79 학군 대안 아카데미 및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디렉터 또는 현장 수퍼바이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- F. 등록이 필요한 성 범죄자가 이사온 곳의 동일한 우편번호 내에 위치한 학교들의 교장은, 이런 통보를 받은 후 2 주 내로 성 범죄자의 사진을 포함한 통보 내용의 사본을 학교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학부모 통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샘플 레터가 이 규정서의 첨부 2 로 첨부되어 있습니다. 본 통지문의 번역본을 포함한 샘플 통지문을 다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: <https://www.schools.nyc.gov/school-life/policies-for-all/chancellors-regulations/volume-a-regulations>
- G. 학교장/프로그램 디렉터는 학부모 회 회장 또는 학부모 회 담당 임원에게 학교에서 접수한 어떤 공지 내용도 학교장이 접수 한 후 2 주 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H. 학교장/프로그램 디렉터는 학교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방과 후 및 주말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룹이 있다면 통보의 접수에 관해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.

<sup>2</sup> 이런 문제를 보고하는 모든 직원들은 본인의 행동이 좋은 의도에서 너무 부주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사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.

- I. 만약 학교장이 성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소속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보로 안전 디렉터가 아닌 사람에게서 받았다면, 이런 통보를 배포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알려야 합니다.

#### V. 조언 및 제한을 포함한 추가적인 절차

- A. 학부모 코디네이터들은 반드시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의 사본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
- B. 이런 통보의 접수와 관련된 우려점을 잠재우기 위해 학부모 회 및 학교의 교육 커뮤니티의 기타 관련자들에게 아웃리치 노력을 기우려야 합니다. 교육 리더 및 학부모들은 통보의 접수에 관한 정보가 즉각적인 우려의 원인이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에 대항한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안내하여야 합니다.

#### VI. 문의

- A. 이 규정서에 관한 법적인 질문은 법률 서비스 담당부 소속 변호사에게 212-374-6888 번으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.
- B. 본 규정서에 관한 기타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:  
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(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)

N.Y.C. Department of Education

52 Chambers Street - Room 218

New York, NY 10007

전화: 212-374-4368

팩스: 212-374-0842

### 샘플 안내문

P.S./I.S./J.H.S./H.S. \_\_\_\_\_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께:

본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! 자녀분이 학교 통학을 포함한 야외 활동 중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. 다음은 자녀와 함께 검토하셔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:

- 학생은 절대로 낯선 사람과 함께 하교하지 말아야 합니다.
- 학생은 절대로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.
- 학생들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어떤 물건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.
- 낯선 사람이 학생들에게 접근하였으며 학교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, 학교로 돌아와 즉시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.
- 어린 학생들은 등하교 시 성인이 동반하도록 합니다.
- 고학년 어린이들은 가능하다면 무리를 지어 함께 걸어서 학교에 등하교하도록 합니다.

학교 교사는 낯선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책임이 있는 성인에게 보고 등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줄 것입니다.

또한 학년도 중 등록된 성 범죄자가 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사 오면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법에 따라 뉴욕시 경찰청이 학교에 통보할 것입니다. 학교가 받는 모든 통지문은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무실과 \_\_\_\_\_ 사무실에 사본이 보관될 것입니다. 등록된 성 범죄자와 관련 정보는 뉴욕주 형사 사건 관련 서비스부(위치:

[http://www.criminaljustice.ny.gov/SomsSUBDirectory/search\\_index.jsp](http://www.criminaljustice.ny.gov/SomsSUBDirectory/search_index.jsp))에서 보시거나 전화

1-800-262-3257 로 문의하실 수 있고 뉴욕시경 NYPD, One Police Plaza, Room 110 C, New York, New York 에서 레벨 3(고위험) 등록 성 범죄자 서브디렉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웹사이트는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 [www.nycenet.edu](http://www.nycenet.edu) 의 학교 중재 및 발달 담당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학교가 성 범죄자 거주 우편번호에 위치해 있다면 학교의 모든 학부모님께 통지문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.

이 절차는 학교의 모든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.

안녕히 계십시오.

학교장/프로그램 디렉터

샘플 안내문

P.S./I.S./J.H.S./H.S. \_\_\_\_\_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께:

본교는 뉴욕시 경찰청으로부터 “등록된 성 범죄자”가 우편번호 \_\_\_\_\_ 지역으로 이사 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. 이 통지의 목적은 “취약 인구”가 포함된 기관에 잠재적 위험 인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. 학교장으로서 저는 이 정보를 담당 교직원에게 전달하고 여러분께 편지를 보냅니다.

본교는 등록된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\_\_\_\_\_ 사무실과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무실에 보관할 것입니다. 또한 등록된 성 범죄자와 관련 정보는 뉴욕주 형사 사건 관련 서비스부(위치: [http://www.criminaljustice.ny.gov/SomsSUBDirectory/search\\_index.jsp](http://www.criminaljustice.ny.gov/SomsSUBDirectory/search_index.jsp))에서 보시거나 전화 1-800-262-3257 로 문의하실 수 있고 뉴욕시경 NYPD, One Police Plaza, Room 110 C, New York, New York 에서 레벨 3(고위험) 등록 성 범죄자 서브디렉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웹사이트는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 [www.nycenet.edu](http://www.nycenet.edu) 의 학교 중재 및 발달 담당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등록된 성 범죄자의 사진 사본이 동봉되어 있습니다. 방문객 제한 절차를 포함한 교내 보안 절차가 강화될 것입니다.

학교 교사는 낯선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책임이 있는 성인에게 보고 등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줄 것입니다. 부모님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지도해 주십시오. 아이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따라가는 위험으로부터 아이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스킬을 개발해야 합니다.

이 절차는 학교의 모든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.

안녕히 계십시오.

학교장/프로그램 디렉터

Enc.